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8호

##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역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여성친화도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9조).
-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7조).
-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3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구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구성과 관련된 사업을 모든 행정 분야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구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동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4조(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20조(설치)**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제안·자문·협의를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제안·자문·협의를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발굴에 관한 사항
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전, 녹지, 건축, 보건,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등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3조(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 시민으로 구성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0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